

장사시설관리규정

제정 1987. 2.23 규정 제 63호	2002. 7.16 규정 제398호
전문개정 1990. 2.27 규정 제 78호	2002.12.20 규정 제417호
1991. 8. 2 규정 제111호	2004. 5.29 규정 제468호
1993.11. 9 규정 제146호	2006. 1. 9 규정 제535호
전문개정 1996. 9.25 규정 제220호	2007. 6.15 규정 제586호
1997. 9.27 규정 제254호	2008.12.11 규정 제617호
1999. 8.20 규정 제296호	2009.12.10 규정 제645호
2000. 1.27 규정 제308호	2012. 4.13 규정 제700호
2000. 9. 4 규정 제329호	2016. 7.12 규정 제814호
2001. 4.23 규정 제3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4. 5.29)(’06.1.9)(’07.6.15)(’12.4.13)

제2조(적용) 장사시설의 관리는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2004. 5.29 본조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사시설” 이라 함은 화장시설 및 조성묘지, 비조성묘지, 합동분묘, 봉안묘지(이하 “묘지” 라 한다), 봉안당, 유택동산, 자연장시설 등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본항개정 2004. 5.29, ’06.1.9, ’07.6.15, ’12.4.13)
- ② “화장시설” 이라 함은 시체,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본항개정 2004.5.29, 2012.4.13)
- ③ “묘지” 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자연장시설을 제외한다. (단서 신설 ’07.6.15)
- ④ “봉안당” 이라 함은 추모를 목적으로 고인의 유골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06.1.9)
- ⑤ “자연장 시설” 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매장을 위해 임시 안치(산골)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본항개정 2002.7.16, 2004. 5.29, ’07.6.15)
- ⑥ “조성묘지” 라 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07.6.15)
- ⑦ “비조성묘지” 라 함은 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 ⑧ “합동분묘” 라 함은 무연고 분묘를 개장 화장 후 유골을 합동안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⑨ “유택동산” 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화장후의 분골을 집단으로 안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 ⑩ “봉안묘지” 라 함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성된 묘지를 말하며 개인, 부부, 가족형 등으로 구분한다.(’97.9.27)(’06.1.9)
- ⑪ “평장” 이라 함은 분묘를 설치함에 있어 봉분과 비석이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분묘 형태를 말한다.(신설 ’97.9.27)
- ⑫ “사이버 추모의 집” 이라 함은 추모시설운영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인의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을 올려 가족과 친지들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가상공간을 말한다.(2000.1.27 신설, 2012.4.13)
- ⑬ “추모의숲” 이라 함은 화장 후 분골을 산골하는 공원형 시설을 말한다.(2004. 5. 29. 본항신설)

제4조(직무대행) 추모시설운영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에 따른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4.13, 2016.7.12.)

제5조(근무제도) 처장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 근무시간을 정하며 휴무는 업무형편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00.9.4)

제6조(매·화장 절차) 매장 및 화장은 별표 1,2의 절차에 따르며, 허가증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개정 '99.8.20, 2008.12.11)

제7조(구비서류) 매·화장시 구비서류는 별표3과 같다.

제8조(심의위원회) ① 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원가조사 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다.(‘07.6.15)

1. 매장 부대비용
 2. 봉안 부대비용(본호개정 '06.1.9, '07.6.15)
 3. 기타 장사관련 중요비용의 결정(본호신설 '07.6.15)
- ②심의위원회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06.1.9, '07.6.15)
- ③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장 화장시설관리 <2012.4.13 개정>

제9조(운영시간) 화장운영시간은 취업규칙에 의한 직원 근무시간의 범위내로 정한다. 다만, 사업소의 업무형편에 따라 처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97.9.27, 2000.9.4, 2009.12.10, 2012.4.13)

제10조 (2004. 5.29 본조삭제)

제3장 묘지관리

제11조(묘지사용의 제한) 시립묘지의 사용은 관계법령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4. 5.29, '07.6.15)

제12조(묘지시설 사용원칙) ①조성묘지 시설은 사용 승인된 묘지 중 신청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허가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묘지 소장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다음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②자투리 공간 개장지 등의 비조성묘지를 재활용할 경우 사전 지정된 순서에 의거 매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분묘의 관리) 조성묘지 및 봉안묘지의 분묘관리는 별초 및 축대관리를 포함한다.(‘97.9.27, 2004. 5.29 본조개정)

제14조(묘지 사용면적) 서울시립묘지 사용면적은 조례에 의하되 필요시 시장 방침에 의거 묘지 면적을 여건에 맞도록 조정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장사시설 관리비 납부) 조성묘지 및 봉안묘지(봉안당) 관리비는 조례 제7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징수하며, 납부된 금액은 시세입금으로 납입한다. (개정 '97.9.27, '99.8.20, '06.1.9, 2008.12.11)

제4장 봉안당관리

제16조(이용절차) 화장 후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할 때는 화장접수시 봉안당 안치를 신청하여야 한다.('97.9.27)(개정 '06.1.9, 2016.7.12.)

제17조(반환<'06.1.9>)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유족의 반환요구 이외에는 반출하지 아니하며, 유족의 요구에 의하여 반출된 유골은 재안치할 수 없다. 다만 합골을 위한 반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7.16 본조 개정)('06.1.9, '09.12.10)

제18조(유골안치) ① 봉안당 유골안치는 지정된 번호순으로 한다.('06.1.9)

②봉안당 유골안치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2001.4.23, 2002.12.20, 2004. 5.29 본항개정)('06.1.9)

1. 서울특별시립 승화원에서 화장한 자로서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 고양, 파주시에 주소를 둔 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서울특별시장의 지정한 보존봉안 등

제18조의2(유골의 이동안치) 봉안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골의 이동안치가 필요한 경우, 유골의 이동안치는 유족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봉안시설의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경우 추모시설운영처에서 유골을 이동 안치시킬 수 있다.(2000.9.4)('06.1.9)

제5장 시설관리

제19조(시설관리 등) ① 처장은 화장시설 및 봉안당, 묘지, 추모의 숲, 추모시설운영처와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한다.(개정 2004. 5.29, 06.1.9, 12.4.13)

②시립묘지 및 시립봉안시설의 사용 또는 사용기간 연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06.1.9)

제6장 장례지원 서비스(개정 2008.12.11)

제20조(이용대상 및 신청) ①사이버 추모의 집 이용대상은 추모시설운영처에서 화장, 봉안, 매장, 자연장(산골) 등 장사시설을 이용한 고인의 유가족 또는 관련 단체에 한한다. 다만, 화장한 서울시민은 사망일자, 화장장소에 관계없이 사이버 추모의 집 이용이 가능하다.(본항개정 2000.1.27, 2000.9.4, 2001.4.23, 2004.5.29, '06.1.9, '07.6.15, 2008.12.11, 2012.4.13)

②사이버 추모의 집을 이용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이버 추모의 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2000.1.27, 2008.12.11, 2009.12.10)

③사이버 추모의 집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00.1.27, 2004. 5.29 본항개정)

1. 고인의 가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에 의한다. 단, 신청시 고인의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증명서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0)
2. 고인의 친인척, 기념사업회, 추모회, 후원회, 동창회, 종친회 등. 단, 고인가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고인가족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친인척의 대표자, 또는 각 단체장(회장)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사이버 추모의 집 이용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신청을 한 본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신청

을 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신청자의 사망, 유고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해지신청자 자격기준은 제3항의 신청자격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0.1.27, 2009.12.10)

제21조(사용기간) (2004.5.29 본조삭제)

제22조(시설사용료 및 자료 수록공간)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고인자료(사진, 음성, 동영상 등) 수록공간을 각 매체별 모두 통합하여 고인 1인당 50MB 이내로 한다.(2000.1.27, 2004. 5.29 본조개정)

제23조(운영시간) ①사이버 추모의 집 홈페이지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2000.1.27)

②삭제(2000.1.27, 2009.12.10)

제24조(이용권한 제한) 처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이버 추모의 집 신청자의 이용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인 또는 타인의 명예훼손
2. 상업적 사용
3. 2년 이상 활동이 없는 경우
4. 기타 사용을 허가함이 사회상규상 심히 부당한 경우 (본조 전면 개정 '07.6.15)

제24조의2(상담센터 등 운영) 장례분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담센터 등 기타 장례지원 서비스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8.12.11)

제7장 자연장 시설 등의 관리(개정 2008.12.11)

제25조(산골<개정 2008.12.11>) ① 화장 후 분골은 승화원 유택동산 및 용미리 1 묘지 “추모의 숲” 에 산골할 수 있다.

② 화장 후 분골을 산골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후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08.12.11)

제25조의2(자연장) ① 자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표4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자연장 후에는 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자연장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의 현상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9.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9.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행하여진 서울시민 납골안치 및 사이버 추모의 집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7.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5.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장사시설 관리비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6조 관련)

매 장 절 차

단 계	담 당 자	행 동 요 령
1. 접 수	접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확인 → 접수 →안내문 배포 • 필요시 현장확인 • 작업 인부에게 통보
2. 작업준비	작 업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준비
3. 운 구	조 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지역까지 운구
4. 매 장	관 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면적 사용여부 - 매장심도 (1m 이상) - 타인분묘 침범여부
5. 묘적부 작성	관 리 원 묘지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적부 및 도면작성 • 확인후 보관

화 장 절 차

단 계	담당자	행 동 요 령
1. 예약	접수담당	○화장 5일전부터 당일(화장 3시간 전)까지 예약 - 24시간 예약접수(전산입력) ○예약시간 및 예약번호 유족 통보(전화예약시)
2. 영구 도착	봉송원	○조의 표시 및 안내 ※통제사항 - 접수 완료시까지 거관 금지 - 유품 하역 금지
3. 접수	접수담당	○예약번호 및 시간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접수 → 위패교부 ※구비서류 미비시 즉시 봉송원에게 통보
4. 거관	조 객	○위패를 봉송원에게 인계 ○영구차에서 수동대차에 옮김
5. 운구	봉송원	○조객으로부터 위패를 인수하여 관위에 놓음 ○봉송원의 안내에 따라 운구 ○안치실 안치(예약시간 도래전) ○화장로로 봉송(운구는 유족) ○화장로 입구(차단문)에서 일단 정지 ○화장작업원에게 인계후 조객은 해당 화장로 관망실로 안내 ○수동대차를 인수하여 원위치로 이동
	작업원	○수동대차를 차단문에서 인수하여 해당 화장로로 이동 - 전동대차의 경우 순차적 절차 적용 ○위패를 해당 화장로에 부착 ○유족이 관망 확인후 화장로로 관 이동
6. 화장 및 분골	작업원	○화장시작 ○화장종료후 화장로 수골 및 분골실에서 유골 수습 - 분골 또는 유골로 수습
7. 인 계	작업원	○수습한 유골 보자기 포장후 유족에게 콘베어벨트로 인계

화장시 구비서류

1. 병사인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발급처 : 병원)
- 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사고사 또는 사인 미상인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발급처 : 병원)
- 검사지휘서 (발급처 : 사망지 관할경찰서)
- 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노환, 자연사인 경우

- 매·화장 경유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 (발급처 : 읍·면·동사무소)
- 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외국인인 경우(화장 기본서류 외 추가)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자 : 대사관 화장동의서(국문 공증)

<별표 4>(제25조의2 관련)(신설 2008.12.11)

자연장 절차

단 계	담당자	행 동 요 령
1. 접 수	접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 확인→ 접수 <li style="padding-left: 20px;">※자연장 설명(안내문 배부) • 비용수납 및 영수증 교부 • 관리원에게 통보
2. 작업준비	관 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장 안장 준비(공동 사전 굴착)
3. 운 구	유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장지까지 운구
4. 유골 안장	관 리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장(관리원 주도하에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장 설명 및 유의사항 안내 - 매장심도 (30cm 이상) - 분골과 흙 1:1 혼합 안장 • 자연장 증명 발급
5. 자연장 기록관리	관 리 원 묘지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장 전산입력 • 자연장 현황 등 관리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08.12.11)

<별지 제2호 서식>(제6조 관련)(개정 2004. 5.29, 2006.1.9, 2016.7.12.)

장 사 시 설 사 용 허 가 증

자료관리번호_____

사 용 시 설	명 칭			
	구 분			
	소 재 지 번 호			
사 망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허가기간		부터	까지	교부사유 신규(), 재교부()
사용허가조건				
1. 기재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집단 매장할 수 있습니다.				
2. 조성묘지 분묘관리비는 매3년마다 납부하셔야 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는 재사용 연장허가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허가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시립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시립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등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당해 시설의 신·증설·재배치 또는 개선 등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립장사시설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모시설운영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중인 분묘는 추모시설운영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인명패 종교표기	종교표기		고인과의 관계	
확인(자필로 기재)	추후 명패의 종교표기로 인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자 : (서명)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 제6조·제9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추모시설운영처장 (인)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09.12.10.)

<별지 제4호 서식>(제25조 관련)(신설2004. 5.29)(개정 2006.1.9, 2008.12.11, 2016.7.12.)

제 호						처리기간
(자연장 · 산골)신청서						즉 시
자료관리번호 :						
사 망 자	사망일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장소		사 망 사 유	사망연월일		
	산골장소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기 타	산골대상구분					
	특 이 사 항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추모시설운영처장		귀하	

-----절-----취-----선-----

제 호					
(자연장 신청 · 산골)확인증					
자료관리번호 :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사 유	사망연월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추모시설운영처장 (인)		

<별지 제5호 서식>(제25조의2 관련)(신설 2008.12.11)(개정 2016.7.12.)

자연장 신청 취소 신청서						
자료관리번호 :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연장지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취소일자						
<p>※자연장 취소는 유골 안장 전에만 가능하며 안장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한 자연장 신청을 취소합니다. 2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추모시설운영처장		

-----절-----취-----선-----

자연장 신청 취소 확인증						
자료관리번호 :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연장지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취소일자						
<p>2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추모시설운영처장		